1. 난립하는 자격제도와 그 배경

일본에서 민간단체 (주로 재단법인)가 주최하는 Exercise/Fitness/Health 관련 자격제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체육/스포츠 관련의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Exercise/Fitness/Health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언뜻 보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주요 민간단체로서는 일본체육협회, 일본 레크리에션 협회, 건강/체력만들기 사업재단,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등을 들 수 있고, 모두 중앙기관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자격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표1에서는 이들 법인이 어느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지와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다.

표 1. 일본의 Exercise/Fitness/Health에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부여하는 주요 자격

|  |  |
| --- | --- |
| <일본체육협회＞  －－＜문부성과학성＞ | ＜일본 레크리에이션 협회＞  －－＜문부과학성＞ |
| ○스포츠지도 기초자격  　　・스포츠 리더  ○경기별 지도자 자격  　　・지도원  ・상급지도원  ・코치  　　・상급코치  　　・교사  　　・상급교사  ○휘트니스 자격  　　・주니어스포츠지도원  　　・스포츠 프로그래머  　○메디칼・콘디셔닝 자격  　　・스포츠 닥터  　　・AT  　　・스포츠 영양사  ○메니지먼트 자격  　　・어시스턴트 매니저  　　・클럽 매니저 | ・레크리에이션・인스트럭터  ・레크리에이션・코디네이터  ・복지 레크리에이션・워커  ・여가생활상담원  ・여가생활개발사  ・그룹 레크리에이션・워커 |
| ＜건강・체력 만들기 사업재단＞  －－＜후생노동성＞ |
| ・건강운동지도사  ・건강운동실천지도자 |
|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후생노동성＞ |
| ・헬스케어・트레이너  ・헬스케어・리더 |
|  |

표 1. 에 나와있듯이 일본에서는 주로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각 법인의 Exercise/Fitness/Health 관련 자격 부여에 관여해 왔지만, official로는 2006년 이후부터 위 자격증은 국가 자격 부여제도가 없어졌다. 그 직접적인 이유로는 2000년에 「행정개혁 대강령」이 각의 결정되어 공익법인이 실시하는 제도에 국가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행정적 관여를 줄이고 민간 사업에 맡겨 경쟁시킨다는 「작은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격제도의 신뢰 자체를 국가가 (위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향상시킴으로 자격 자체의 질을 높이고, 민간(밑에서)의 발상과 창의 연구에 의해 제도적인 신뢰성과 지도 수요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절반 정도는 국가 자격증 부여 하에서 난립해 온 지도자 자격의 상황이 그대로 현존해 있고, 오늘날에도 공급 과다로 인하여 모처럼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행정)가 주도하는 자격제도 안에서 예측되는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공급예측)와, Exercise/Fitness/Health를 원하는 일반 사람들에 의해 실제 필요(수요실태)와는 부조화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일본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운동과 스포츠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클럽 미가입자는 클럽가입자의 2배 이상 존재한다는 데이터가 있다. 즉, 운동과 스포츠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예측된 정기적으로 운동 또는 스포츠의 실시하는 사람 중 3분의 2가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제도적인 지도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같은 정기적인 운동과 스포츠의 실시자에 대한 지도 수요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점점 난립할 것으로 예측되는 Exercise/Fitness/Health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전문가로서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만간에 제도의 축소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자격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일본체육협회에 의한 자격제도의 사례 : 현상과 문제점

이번에는 일본의 Exercise/Fitness/Health에 관여하는 지도자격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일본체육협회의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일본체육협회의 지도자 양성사업은 1964년의 동경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1965년부터 스포츠 트레이너 양성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에는 표1 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역스포츠에 관련한 무보수지도자부터 경기별 상급코치까지 폭 넓은 자격 인정을 행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2006년에 국가 자격부여 사업은 없어졌지만, 2005년에 일본체육협회가 공인한다는 의미의 「공인스포츠지도자 제도」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지도자 양성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의미로는, 일본의 Exercise/Fitness/Health에 관련하는 지도자 자격제도 전체 안에서 좀더 역사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 제도는 「안전하고, 올바르게, 즐거운 스포츠활동에는 지도대상에 따른 적절한 지도능력을 갖는 유자격자가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체육협회가 육성하는 「공인 스포츠지도자」는 「지도대상자에 대해 책임을 갖고 적절한 스포츠 지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능력과 스포츠에 관한 지식을 익힌 인재」이다. 현재 스포츠 활동 하는 사람들의 연령(발육발달단계)과 기능레벨, 흥미와 지향 등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분의 관점에서부터 15종류의 지도자자격으로 분류한다.

1. 영역성 - 지역스포츠, 경기종목, 휘트니스, 메티컬-콘디션닝, 메니지먼트등에 의한 구분
2. 대상성 - 주로 연령에 의한 구분
3. 단계성 – 기초, 중급, 상급 등의 레벨에 의한 구분
4. 전문성 – 무급봉사자에서 유급(직업)에 이르기까지의 구분

공인스포츠 지도자의 등록 수는 2009년 10월 시점에서 총 270,953명에 달하고 있다. 그 내역은 지역에 있어서 기초적인 스포츠지도와 경영에 해당하는 「스포츠지도자 기초자격」이 130,525명, 경기별로 주로 지도를 행하는 「경기별 지도자 자격」이 121,836명, 휘트니스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지도를 행하는 「휘트니스 자격」이 10,100명, 스포츠 선수의 건강관리, 상해의 진단과 예방, 재활과 콘디셔닝, 영양관리와 서포트 등을 행하는 「메디컬/콘디션닝 자격」이 6,565명,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등에 매니지먼트를 행하는 「매니지먼트 자격」이 1,927명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커리큘럼의 내용에 대해서 이다. 각지도자자격을 위한 양성 강습회는 가맹경기단체와의 협력을 기초로, 통일된 이념과 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공통과제」와 「전문과목」으로부터 편성된 커리큘럼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공통과목」은 스포츠 지도에 필요한 스포츠 일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일본체육협회가 담당한다. 「전문과목」은 각 스포츠 특수성에서 가맹 경기단체 등의 전문과목 실시단체가 담당하고, 여러 가지 자격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으로 강습회를 행하고 있다. 강습시간은 자격의 단계성(난이도)에 의해서 다르고 (공통과목의 경우), 기초적 자격인 「스포츠리더」와 「지도원」등은 「공통I」 35시간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뤄야 한다. 그 위 레벨인 「상급지도원」과 「스포츠프로그래머」는 「공통 I」과 「공통 II」를 합하여 70시간, 가장 상급레벨인 「상급코치」와 「상급교사」는 「공통 I」에서 「공통 IV」까지 총 192.5시간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상급코치」와 「상급교사」처럼 「공통 I」부터 「공통 IV」까지 모든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전문 커리큘럼을 수강해야 하는 것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예를 들어 「공통과목 I」의 커리큘럼 내용은 「문화로서의 스포츠」「지도자의 역할 I」「트레이닝론」「스포츠지도자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I」「스포츠와 영양」「지도계획과 안전관리」「주니어기의 스포츠」「지역의 스포츠 진흥」등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스포츠지도자에게 기초가 되는 교양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와 전통 있는 일본체육협회가 부여하는 지도자격 제도이면서, 2008년에 실시된 수강자에 대한 조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강습회에 대한 수강자의 중요도와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강습회의 내용」「강습회의 일정」「긴 수강기간」「수강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수강자는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강습일정과 강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습내용과 수강료에는 별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도활동에 대한 보수는 자격갱신의 유무에 상관없이 약 64%가 무보수이다. 따라서 강습회에 대해서는 그 만족도를 올리는 것과 내용과 지도자의 요구와의 조화를 높이는 것, 강습회의 시기, 길이, 수강료의 연구와 수정　등을 과제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습내용에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연수회의 충실, 지도를 원하는 지역의 클럽 등의 내용과의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지도자의 사회적 승인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일본의 자격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

이미 앞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자격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자격의 난립과 공급과다에 의한 활용레벨의 저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자격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체육」이라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격을 확립 하려고 하는 문부과학성 주도의 국가 자격부여 제도와 「운동」이라고 하는 지도자격을 확립하려는 후생노동성주도의 국가 자격부여 제도라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두가지 모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의 증가를 후원해 왔지만, 최근에 직접적으로는 자격인정에서 손을 빼고, 민간조직의 매니지먼트에 맡기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자격부여 제도의 레벨에서 공통적인 것을 대중의 스포츠와 운동의 수요에 대해서 교육적 의의와 건강적 의의를 실현하지 않는 스포츠와 운동에는 자격제도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 자세이다. 이것은 후진국국가에서나 있을만한 「따라잡고, 추월하는」 의 발상에 통하는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특징으로 생각될 지 모르겠다. 그 결과, 이 같은 이념에서 양성되는 지도자 자격은 사람들이 스스로 스포츠와 운동에 몰두하는 수요와 부조화를 일으켜, 자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부르는 것이 된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자격의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 획득시키는 자격인가? 그 난이도도 문제시된다. 예를 들면 일본체육협회가 인정하는 AT는 공통 152.5시간, 전문 600시간과 많은 시간을 통하여 취득이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직접기반은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의학과 전면적으로 협력해서 직업 기반을 구축하는 미국의 AT제도와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의 교육을 하는 AT조차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격들은 너무나도 취득이 간단해서, 그 권위성이나 신뢰성의 확보에 과제가 남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같은 자격에 대한 평가는 도대체 운동과 스포츠에 관한 지도자 자격이 스포츠의 아마츄어리즘의 연장선상으로 생각되어 거의 모두가 무급봉사자 자격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온 경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Exercise/Fitness/Health에 관련한 자격이 무급봉사 형태로서 자리매김되어 왔을까? 그 첫번째 이유는 이것과 관련한 자격의 professionals은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교체육의 교원면허 자격에 독점되고, 건강적 측면에서는 의학의 의사면허에 독점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Exercise/Fitness/Health에 관련한 자격은 이 양자의 확고한 자격제도에 끼어있어서 명확한 보수가 따르는 국가 자격부여 제도로서 인정된 professionals로 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자격취득을 위해서 드는 수강료와 인정료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제비용이 고액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격취득의 미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그 같은 사정에 더해서, 1957년에 발촉한 1961년의 스포츠진흥법에 의해서 시읍면의 교육위원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교육지도위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개정에 의해서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개정되었지만, 그 위원의 자격은 시읍면 교육위원회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스포츠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다음 항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열의와 능력을 갖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체육지도위원은 자격취득이 강제가 아닌 비상근 직원 (특별직)으로서 (적지만) 보수를 받는 지위로서 성립되어 있고, 그 수는 1,808 시읍면에서 총 53,835명 (2008년 4월 1일 현재)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자격에 관계없이 지역의 체육과 스포츠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적은 보수에 의해 효율적인 스포츠진흥을 달성하는 국가적 수단이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앞으로 요구되는 Exercise/Fitness/Health의 전문직화를 이 상태로 간다면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Japanese Credential System of Allied Professionals in Exercise/Fitness/Health은 전후 일본의 체육과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에 어느 정도로 공헌해 온 전통과 실적이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활용이 충분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점, 거의 모두가 봉사자 형태로 무보수라는 것 등에 의해 그 제도 자체가 큰 전환점으로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자격제도와 현장의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하자면, 한편으로 자격이 너무 강조되어서 「자격이 없으면 지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한 자격편중주의 (credentialism)에 빠져, 지금까지 현실에는 많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지지되어온 스포츠 지도의 실태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되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격의 전문성이 보수를 수반하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한, 자격취득의 매력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국가 자격부여 시스템이 비정부 단체를 지지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은 자격에 대한 국가적인 권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태를 자격제도에 대한 「위기」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역으로 새로운 개혁의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발상으로 보면, 자격제도자체가 불안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보다 큰 정치적 권위와 국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본의 자격제도에 대한 역사를 뒤돌아보면 자격이 난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과의 상세한 지도수요는 환기시키지 못하고, 수급 바란스가 붕괴된 채로 「활용」만을 외치는 기묘한 현상을 불러 일으켜 온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Exercise/Fitness/Health에 관련하는 자격이 주로 체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발상과 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적 발상에서 도출되는 강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령화로 성숙화하는 앞으로의 일본 사회에 요구되는 「지도」는 이 같은 강제성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요구되어 지는」지도이고, 잠재적인 지도수요를 현실화하는 지도이다. 또한, 이를 위한 계획과 완성이 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따라서 그 같은 관점에서는 자원봉사자 지도부터 전문지도까지의 지도 시스템을 지도 받는 측의 수요에서 도출하여 설계하고 Exercise/Fitness/Health에 관련되는 지도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노력과 연구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지도는 단지 training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learning을 도출하는 것으로, 깊은 스포츠와 운동에 대한 이해에서 발전되는 것이다. 그 의미로, 일본 체육협회가 커리큐럼화한 「공통과목」의 설정은 중요하지만, 전문실기와 전문지도와의 형태가 연결되거나 전문교양의 형태를 검토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자격제도는 사람들로부터 「좋아해주는」지도와 사회에서 「원하는」지도를 통합하는 지도수요를 끌어내는 방향을 목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각주 (note)

본호 제 2장의 [일본체육협회에 의한 자격제도의 사례 : 현상과 문제점]에 있어서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스포츠지도자육성부 지도자육성과에 의해 제공된 강습회 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다.